



#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8호: 2023년 6월

mazars



# Content

04	세법 업데이트
09	인사& 급여 업데이트
11	회계감사 업데이트
16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 세법 개정사항

## 법인세

2022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 요건과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 요건과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	신설 (2022년 12월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익금불산입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li> <li>•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li> </ul>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li> <li>2) 혼성 금융상품*</li> <li>3)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외)</li> </ol> </li> </ul>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익금불산입률	95%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적 업종 (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 (이자, 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sup>1)</sup>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li> <li>•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sup>2)</sup>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li> <li>2)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li> </ol> </li> </ul>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2) 부채 ·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 세법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p><b>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li> <li>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li> <li>소매업, 미용 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li> <li>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li> </ul> </li> </ul>	<p><b>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li> <li>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li> <li>소매업, 미용 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li> <li><b>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b></li> </ul> </li> </ul>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유튜버 등이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해당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합니다.

현행	개정
<p>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li> </ul>	<p><b>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li> <li>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li> </ul> </li> </ul>

2023년 2월 28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법 개정사항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 인하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 개정 전: 2023년부터 세율 인하

시장	2022년	20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코넥스, 기타 (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및 코스피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부과

- 개정: 코스피 ·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시장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코넥스, 기타 (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및 코스피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부과



# 인사 & 급여 개정사항

## 4대 보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 (2023년 7월부터 적용)

-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2년 연말정산 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도 변경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022년 7월 ~ 2023년 6월	2023년 7월 ~ 2024년 6월
하한액	35만원	37만원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

### 건강보험 보수월액 조정 및 연말정산 안내 (2023년 4월부터 적용)

- 20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 4월에 건강보험이 2022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당초 추가금액에 대해서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공단은 추가보험료가 9,890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 회계감사 업데이트

##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유도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이지만 모든 회사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지적사례는 1.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및 금융자산 과대계상, 2.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3.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입니다.

### 1.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및 금융자산 과대계상

#### 1) 지적내용

- 상장회사 A사의 최대주주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A사가 사모펀드 갑, 을에 400억원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동 사모펀드를 통하여 최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도록 한 후, 동 자금을 투자 당일에 전액 최대주주에게 송금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 A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사모펀드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 2) 조치사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2.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 1) 지적내용

- C사의 경영진은 전환사채를 중복으로 발행한 후 동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용하였습니다.
- C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임직원 대여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했습니다.

#### 2) 조치사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C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퇴직자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3.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 1) 지적내용

- D사는 자가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다수 호실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호실은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호실은 제3자에게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 D사는 제 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으며, 최초 취득 이후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재평가 차액을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아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 했습니다.

#### 2) 조치사항

- 금융감독원은 D사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 1) 지적내용

- E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영업부문) 문단 34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인 F사 및 G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조치사항

- 금융감독원은 E사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핵심 지표

##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
10억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9%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3.1%
3000억원 초과	26.4%

\*지방소득세 포함

###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4%	4%
국민연금	4.50%	4.50%
고용보험	0.9% + (0.25%~0.85%)	0.90%
산재보험	0.7% ~ 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35% ~ 28.85%	월 평균보수의 약 9.40%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Contacts

##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mailto:contact@mazars.kr)

##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mailto:seung-ha.park@mazars.kr)

##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mailto:julien.herveau@mazars.kr)

##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mailto:jung-min.lee@mazars.kr)

##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mailto:gyu-taek.sim@mazars.kr)

## [www.mazars.kr](http://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47,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30,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7,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 [www.mazars.com](http://www.mazars.com)

© Mazars 2023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심현호, 박동원, 심민규,  
김양규, 장유미, 김온유, 반설영, 정한움